



K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KB 코스닥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코스닥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코스닥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C8681)
2.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3. 판 매 회 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4. 작 성 기 준 일: 2021년 05월 1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1년 06월 1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18년 05월 10일부터 2018년 05월 18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투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8.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모집기간동안 모집(판매)된 금액이 20억원 미만(선취판매수수료 포함 금액)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납입한 투자금액을 판매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총수가 법령에서 정하는 1인이 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되며, 특히 3년 이내에 투자자가 1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투자자중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투자신탁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선취판매수수료 포함) 중 3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투자신탁의 매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오니 투자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투자하며, 이 중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및 해당 투자신탁에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설정일 이후 신규상장 종목의 부재, 공모주 물량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제 혜택 및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일반적인 주식보다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로 인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일반적인 주식형투자신탁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및 유동성부족 위험과 신용위험 등에 노출되며, 벤처기업 주식의 유동성부족 및 신용위험 등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1.05.18)

KB 코스닥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펀드코드: C8681]

<요약정보>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KB 코스닥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법에서 정한 소규모펀드(설정 1년 후 50억미만)인 경우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주식외사(2502-2167-8200)				
모집[판매] 기간	2018년 05월 10일부터 2018년 05월 18일까지 (판매회사에 따라 모집기간 단축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1년 06월 10일		존속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까지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종류[Class]	A	A-E	C	C-E	S
가입자격	-	인터넷가입자	-	인터넷가입자	펀드한정 판매사의 인터넷시스템 가입자
선·후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	-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보수 [연, %]	판매	0.600	0.300	1.000	0.500
	운용 등	0.685(집합투자업자보수: 0.640, 신탁업자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기타	0.001	0.000	0.000	0.000
	총보수·비용	1.286	0.985	1.685	1.185
주석사항	<p>※ 상기 종류 외 C-F 및 C-S 클래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 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p>※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 상기 보수는 보수계산기간(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의 종료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지급합니다.</p>				

매입 방법 (자금납입일 기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2018년 05월 18일)의 기준가격	환매 방법 (환매청구일 기준)	15시 30분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 지급
기준가	1,000좌당 1,000원 ※ 산정방법: 펀드순자산/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 * 1,000(1,000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증권·증권기업의 주식 및 벤처기업 공모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상세설명
주식	100%이하 - 가 및 나: 합산하여 50%이상 - 가: 15%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으로서 동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및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증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기업의 주식
채권	5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한다)

※ 위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KOSDAQ 지수*50% + KOSPI 지수*40% + 콜(KRW)*10%

- **KOSDAQ 지수:** 코스닥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1997년 1월 3일부터 산출·발표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구성종목으로 산출되는 지수임
- **KOSPI 지수:**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수임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주식(이하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 및 벤처기업 공모주(신주) 등에 주로 투자하면서 시황에 따라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의 주식에도 일부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1)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신주, 구주) 및 벤처기업 공모주(신주)에는 투자신탁 재산의 50%이상 투자하며, 이 중 벤처기업 공모주(신주)에 15%이상 투자합니다.

1)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 투자 전략

- 산업의 성장 잠재력, 상대적인 경쟁우위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확장의 용이성 등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및 매출 또는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선별 투자
-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혁신기업 육성 정책 및 4차 산업혁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2) 벤처기업 공모주(신주) 투자 전략

- 코스닥시장에서의 IPO와 유상증자 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30%이상 우선배정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
- 기업 내재가치 분석 및 성장잠재력 분석을 통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공모주에 투자
- 배정받은 공모주는 상장 이후 또는 의무보유기간^{주)} 종료 후 단기간에 매도하여 조기 수익화정을 목표로 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성장성이 높고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기업 및 적정가치 대비 저평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펀드 총자산의 15%이상 유지할 계획
-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공모주(신주)를 15%이상 투자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기간에 배정받은 공모주는 상장 이후에도 가치 변동에 상관없이 상당히 오랜기간 보유할 수 있음

^{주)}공모주 투자 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보유(Lock-up) 기간이 있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상기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및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6개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에도 일부 병행 투자하며, 편입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성장 산업군 내에서 매출 또는 이익 성장률이 높은 대형주 중 배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3) 비상장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으며, 주식 관련 자산 투자 이외의 자금은 채권, 기업어음 및 유동성 자산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3. 운용전문인력

(2021년 05월 18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펀드 수	자산규모
남은영	1987년	책임	10개	1,803억
윤태환	1983년	부책임	9개	1,730억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기준일: 2021년 05월 18일, 단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7.35	2.26	-16.40	-	-
비교지수	43.96	-3.28	-15.22	-	-

* 비교지수: KOSDAQ 지수*50% + KOSPI 지수*40% + 콜(KRW)*10%

*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협 의 주 요 내 용
원본손실위험 등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준수의무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① 및 ②)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해당 투자신탁에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설정일 이후 신규상장 종목의 부채, 공모주 물량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및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정받은 공모주 등 해당 주식의 가치 변동과 상관없이 상당히 오랜기간 보유할 수 있으므로,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가격하락시 매도하지 못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50%이상 투자 ② 벤처기업 신주에 15%이상 투자
벤처기업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벤처기업 등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 중 기술력 또는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신생기업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여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및 유동성부족 위험과 신용위험 등에 노출되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일부 투자합니다.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의무보유(Lock-up)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가격이 하락하여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등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후 해당 공모주가 상장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해당 공모주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동 기간 이 투자신탁의 해지 등이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과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시장 내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전략은 시장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 종목 일부 편입가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특정 종소형주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관리

- (1) 담당 운용부서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합니다.
- (2) 투자신탁의 성격 및 공모/사모 펀드 구분에 따른 운용부서의 세분화를 통해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 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 (3) 기본적으로 주식 등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투자자의 수익극대화 도모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기업(내부/외부 리서치 활용 및 신용평가기관 업무협정)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 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4) 주식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의 운용전략회의를 통해 선정한 Universe(투자후보종목 군)에서 투자종목선정과 분산투자를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5) 포트폴리오 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1)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2) 투자자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계약 기간	3년 이상
세제 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 기한 -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까지 - 그 외의 투자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감면 세액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투자신탁 투자일(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투자신탁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투자신탁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제 혜택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는 **제1분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정착주자를 당사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KB 코스닥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						
종류(클래스)	A	A-E	C	C-E	C-F	S	C-S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682	C8683	C8684	C8685	C8686	C8687	C868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1좌=1원, 원본액 기준)

※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추가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 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2018년 05월 10일부터 2018년 05월 18일까지(판매회사에 따라 모집기간 단축 가능)

-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KB증권)의 본·지점

-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판매)된 금액이 20억원 미만(선취판매수수료 포함 금액)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투자금액은 판매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KB 코스닥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						
종류(클래스)	A	A-E	C	C-E	C-F	S	C-S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682	C8683	C8684	C8685	C8686	C8687	C868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짜	주요 내용
2018.05.18	최초설정
2021.03.17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희은 → 남은영)
2021.06.10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실제 수익률 변동성), 위험등급 변경(2등급 → 1등급)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까지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2-2167-8200)

※ 자세한 내용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21년 05월 18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 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남은영	1987년	책임	8개	1,650억	메리츠증권 리서치팀 2년 5개월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5년 6개월
윤태환	1983년	부책임	9개	1,825억	NH-CA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5년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5년 6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가约定된 투자신탁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2021년 05월 18일 기준)

성 명	운 용 기 간	비 고
최 회 은	2018.04.30~2021.03.16	
남 은 영	2021.03.17~현재	주식운용본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 단위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유형	가입자격	구분	부과 비율
A 클래스	가입제한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682
		최초 설정일	2018.05.18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 신탁 보수 (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0.640%
			판매회사보수 0.600%
			신탁회사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총 보수 1.285%
A-E 클래스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 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683
		최초 설정일	2018.05.18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 신탁 보수 (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0.640%
			판매회사보수 0.300%
			신탁회사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총 보수 0.985%
C 클래스	가입제한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684

		최초 설정일	2018.05.18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C-E 클래스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 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640%
		판매회사보수	1.000%
		신탁회사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총 보수	1.685%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685
C-F 클래스	펀드, 보험사 특별계정, 기금, 전문투자자, 50억 이상 매입한 투자자	최초 설정일	2018.05.18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집합투자업자보수	0.640%
		판매회사보수	0.500%
		신탁회사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총 보수	1.185%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686
		최초 설정일	미설정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S 클래스	펀드판매에 한하여 인가 받은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640%
		판매회사보수	0.100%
		신탁회사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총 보수	0.785%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687
		최초 설정일	미설정
		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집합투자업자보수	0.640%
		판매회사보수	0.280%
C-S 클래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회사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총 보수	0.965%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688
		최초 설정일	2018.05.18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 신탁 보수 (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0.640%
			판매회사보수	0.030%
			신탁회사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총 보수	0.715%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주식 및 벤처기업 공모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100%이하 - 가 및 나: 합산하여 50%이상 - 가: 15%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으로서 동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및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②	채권	5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한다)			
③	어음	50%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④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⑤	환매조건부의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⑥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이하				
⑦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⑧	①에 따른 투자비율 중 가 목 및 나 목을 합산한 투자비율과 가 목의 투자비율을 모두 충족한 날부터 매 6개월마다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이상, 15%이상을 유지해야 함					
⑨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가 목 및 나 목 비율 제외)~③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가 목 및 나 목 비율 제외)~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의 가 목 및 나 목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월간						
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6월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④~⑦ 및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채권 및 어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② 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①~③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p> <p>①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p> <p>②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①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마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증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p>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 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회사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주식(이하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 및 벤처기업 공모주(신주) 등에 주로 투자하면서 시황에 따라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의 주식에도 일부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1)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신주, 구주) 및 벤처기업 공모주(신주)에는 투자신탁 재산의 50%이상 투자하며, 이 중 벤처기업 공모주(신주)에 15%이상 투자합니다.

1)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 투자 전략

- 산업의 성장 잠재력, 상대적인 경쟁우위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확장의 용이성 등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및 매출 또는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선별 투자
-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혁신기업 육성 정책 및 4차 산업혁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2) 벤처기업 공모주(신주) 투자 전략

- 코스닥시장에서의 IPO와 유상증자 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30%이상 우선배정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
- 기업 내재가치 분석 및 성장잠재력 분석을 통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공모주에 투자
- 배정받은 공모주는 상장 이후 또는 의무보유기간^(주) 종료 후 단기간에 매도하여 초기 수익확정을 목표로 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성장성이 높고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기업 및 적정가치 대비 저평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펀드 총자산의 15%이상 유지할 계획
-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공모주(신주)를 15%이상 투자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기간에 배정받은 공모주는 상장 이후에도 가치 변동에 상관없이 상당히 오랜기간 보유할 수 있음

^(주)공모주 투자 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보유(Lock-up) 기간이 있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상기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및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6개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에도 일부 병행 투자하며, 편입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성장 산업군 내에서 매출 또는 이익 성장률이 높은 대형주 중 배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3) 비상장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으며, 주식 관련 자산 투자 이외의 자금은 채권, 기업어음 및 유동성 자산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비교지수: KOSDAQ 지수*50% + KOSPI 지수*40% + 콜(KRW)*10%

▪ 정의

- **KOSDAQ 지수:** 코스닥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1997년 1월 3일부터 산출·발표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구성종목으로 산출되는 지수임
- **KOSPI 지수:**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수임
-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 및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투자대상을 고려하여 비교지수를 선정하였음

(2) 위험 관리전략

- 1) 담당 운용부서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합니다.
- 2) 투자신탁의 성격 및 공모/사모 펀드 구분에 따른 운용부서의 세분화를 통해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 3) 기본적으로 주식 등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투자자의 수익극대화 도모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기업(내부/외부 리서치 활용 및 신용평가기관 업무협정)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 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4) 주식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의 운용전략회의를 통해 선정한 Universe(투자후보종목 군)에서 투자종목 선정과 분산투자를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5) 포트폴리오 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주식 및 공모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주식,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준수의무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① 및 ②)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해당 투자신탁에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설정일 이후 신규상장 종목의 부재, 공모주 물량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및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정받은 공모주 등 해당 주식의 가치 변동과 상관없이 상당히 오랜기간 보유할 수 있으므로,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가격하락시 매도하지 못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50%이상 투자 ② 벤처기업 신주에 15%이상 투자
벤처기업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벤처기업 등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 중 기술력 또는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신생기업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여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및 유동성부족 위험과 신용위험 등에 노출되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일부 투자합니다.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의무보유(Lock-up)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가격이 하락하여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등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후 해당 공모주가 상장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해당 공모주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동 기간 이 투자신탁의 해지 등이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과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시장 내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전략은 시장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 종목 일부 편입가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특정 종소형주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대금결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가 환매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거래부진,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 및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분산투자 등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의무해지 위험	투자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투자자가 1인이 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주식 배당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이 투자신탁은 연환산 표준편차(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 기준)가 25.88%로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 하락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KB자산운용(주)는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 표준편차: 펀드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한 값으로써 수익률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임.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며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1) 집합투자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 (3) 선취판매수수료
 -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 2)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 3)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종류별 가입 요건

종류 유형	가입자격	구분		부과 비율
A 클래스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1.285%
A-E 클래스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0.985%
C 클래스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1.685%
C-E 클래스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1.185%
C-F 클래스	펀드, 보험사 특별계정, 기금, 전문투자자, 50억 이상 매입한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자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0.785%
S 클래스	펀드판매에 한하여 인가받은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0.965%
C-S 클래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0.715%

* 선취판매수수료를 및 후취판매수수료들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 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판매

- (1)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판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도 가능합니다.
-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판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2영업일(T+1)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판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T+3)에 판매금액 지급
 - 2)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판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3영업일(T+2)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판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T+3)에 판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T)	제2영업일(T+1)	제3영업일(T+2)	제4영업일(T+3)
15시 30분 이전 판매시	판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판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경과 후 판매시	판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판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판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판매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판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 (3) 후취판매수수료
 -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2)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3년 미만 판매시 판매대금의 0.15% 이내
- (4)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판매: 투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판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판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판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판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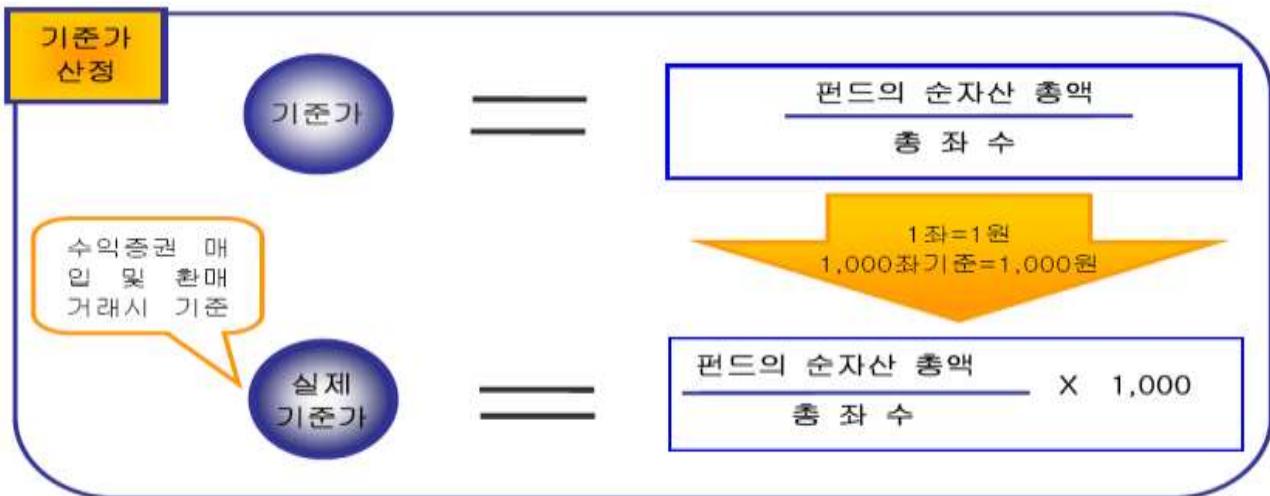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개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개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개시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개시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구분	평가기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취득한 국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국내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국내 비상장채권 (CP, CD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채무증권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파생결합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또는 계산대리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는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펀드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펀드가 거래되는 외국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운용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며, 해당 평가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가입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	-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
A-E	온라인 가입 투자자	납입금액의 0.5% 이내	-		-
C	가입제한 없음	-	-		-
C-E	온라인 가입 투자자	-	-		-
C-F	펀드, 보험사 특별계정, 기금, 전문투자자, 50억 이상 매입한 투자자	-	-		-
S	펀드판매에 한하여 인가받은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C-S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투자신탁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A	0.640%	0.600%	0.030%	0.015%	1.285%	0.001%	1.286%	1.286%	0.286%
A-E	0.640%	0.300%	0.030%	0.015%	0.985%	0.000%	0.985%	0.985%	0.281%
C	0.640%	1.000%	0.030%	0.015%	1.685%	0.000%	1.685%	1.685%	0.280%
C-E	0.640%	0.500%	0.030%	0.015%	1.185%	0.000%	1.185%	1.185%	0.286%
C-F	0.640%	0.100%	0.030%	0.015%	0.785%	-	0.785%	0.785%	-
S	0.640%	0.280%	0.030%	0.015%	0.965%	-	0.965%	0.965%	-
C-S	0.640%	0.030%	0.030%	0.015%	0.715%	0.000%	0.715%	0.715%	0.280%

지급 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	-----------	---	---	-----------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미설정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은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구분	종류	1년	2년	3년	4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원)	A 클래스	230,081	364,721	504,455	800,404
	A-E 클래스	150,289	254,407	362,790	593,385
	C 클래스	171,817	348,947	532,046	917,510
	C-E 클래스	121,137	246,646	377,036	653,616
	C-F 클래스	80,408	164,054	251,300	437,487
	S 클래스	98,757	201,304	308,073	535,303
	C-S 클래스	73,264	149,531	229,137	399,198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이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 (3)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조세특례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근거	조세특례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계약 기간	3년 이상
세제 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 기한 -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까지 - 그 외의 투자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감면 세액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투자신탁 투자일(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투자신탁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투자신탁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제 혜택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종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사전문가와 협의하는 데에 유의하십시오.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대차대조표		
	제 3기 2021.05.17	제 2기 2020.05.17	제 1기 2019.05.17
운용자산	2,783,816,877	6,029,417,076	7,697,794,382
증권	2,746,872,580	5,962,985,758	7,589,922,54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6,944,297	66,431,318	107,871,83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7,552,395	128,228,335	163,799,582
자산총계	2,821,369,272	6,157,645,411	7,861,593,96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2,443,022	133,015,122	254,269,506
부채총계	22,443,022	133,015,122	254,269,506
원본	2,219,390,365	7,052,134,070	9,101,756,828
수익조정금	-542,495,894	451,305,620	272,007,717
이익잉여금	1,122,031,779	-1,478,809,401	-1,766,440,087
자본총계	2,798,926,250	6,024,630,289	7,607,324,458

(단위: 원, %)

항 목	손익계산서		
	제 3기 2020.05.18 ~ 2021.05.17	제 2기 2019.05.18 ~ 2020.05.17	제 1기 2018.05.18 ~ 2019.05.17
운용수익	2,071,582,976	72,960,977	-1,646,074,790
이자수익	131,564	581,688	9,653,178
배당수익	25,688,685	44,620,016	73,175,929
매매/평가차익(손)	2,045,762,727	27,759,273	-1,728,903,897
기타수익	0	0	1,942,301
운용비용	51,652,871	84,163,179	120,691,933
관련회사 보수	51,652,871	84,163,179	120,691,93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682,468	1,143,286	1,615,665
당기순이익	2,019,247,637	-12,345,488	-1,766,440,087
매매회전율	231.64	0.00	0.00

주) 매매회전율: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함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3기 (2021.05.17)		제2기 (2020.05.17)		제1기 (2019.05.17)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0		0		0
운용자산		0		0		0
현금및예치금		36,944,297		66,431,318		107,871,837
1. 현금및현금성자산	36,944,297		66,431,318		107,871,837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여유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2,746,872,580		5,962,985,758		7,589,922,545
1. 지분증권	2,746,872,580		5,962,985,758		7,589,922,545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0		0		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관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작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타자산		84,945,349		128,228,335		163,799,582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6,425,179		123,884,664		160,866,062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4,506		5,755		142,630	
4. 미수배당금	48,515,664		4,337,916		2,790,89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2,868,762,226		6,157,645,411		7,861,593,964
부 채		0		0		0
운용부채		0		0		0
1. 옵션매도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2,443,022		133,125,606		254,451,98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3,623,724		35,231,135		100,954,109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80,074,802		127,097,886	
4. 수수료미지급금	8,819,298		17,819,669		26,399,989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0		0		0	
부 채 총 계		22,443,022		133,125,606		254,451,984
자 본		0		0		0
1. 원본						
2. 이월잉여금	2,219,390,365		7,052,134,070		9,101,756,828	
(발행좌수 당기 : 2,219,390,365 좌 전기 : 7,052,134,070 좌 전전기 : 9,101,756,828 좌)	579,535,885		-1,027,503,781		-1,494,432,370	
(기준가격 당기 : 1,309.26 원 전기 : 877.66 원 전전기 : 847.63 원)	이익잉여금 수익조정금	1,122,031,779 -542,495,894	-1,478,809,401 451,305,620	-1,766,440,087 272,007,717		
자 본 총 계		2,846,319,204		6,024,519,805		7,607,141,980
부 채 외 자 본 총 계		2,868,762,226		6,157,645,411		7,861,593,964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3기 (2020.05.18 ~ 2021.05.17)		제2기 (2019.05.18 ~ 2020.05.17)		제0기 (2018.05.18 ~ 2019.05.17)	
	금 액		금 액		금 액	
운용수익						
1. 투자수익						
1. 이자수익	131,564	2,071,582,976	581,688	72,960,977	-1,644,132,489	
2. 배당금수익	25,688,685	25,820,249	44,620,016	45,201,704	84,771,408	
3. 수수료수익	0	0	0	0	0	
4. 임대료수익	0	0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2,724,949,138	2,724,949,138	2,186,171,948	2,186,576,785	829,663,195	829,663,195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0	0	404,837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0	0	
7. 기타이익	0	0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679,186,411	715,330,086	2,158,772,062	2,638,376,479	2,558,567,092	4,216,710,427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36,143,675	0	479,604,417	0	1,658,143,335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0	0	
7. 대손상각비	0	0	0	0	0	
8. 기타차손	0	0	0	0	0	
운용비용						
1. 운용수수료	25,677,040	52,335,339	40,550,934	85,306,465	58,341,435	122,307,598
2. 판매수수료	24,773,089		41,712,276		59,616,591	
3. 수탁수수료	1,202,742		1,899,969		2,733,907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수수료	0		0		0	
6. 기타비용	682,468		1,143,286		1,615,665	
당기순(손실)이익						
1. 1000좌당 순(손실)이익		2,019,247,637		-12,345,488	-1,766,440,087	
		910		-2	-19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가.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화,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판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5.18 ~ 2021.05.17	34	29	0	0	23	25	11	14
2019.05.18 ~ 2020.05.17	46	39	0	0	12	9	34	29
2018.05.19 ~ 2019.05.17	54	54	0	0	8	7	46	39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화,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판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5.18 ~ 2021.05.17	5	5	0	0	4	4	2	2
2019.05.18 ~ 2020.05.17	6	5	0	0	0	0	5	5
2018.05.19 ~ 2019.05.17	10	10	0	0	4	4	6	5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다.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화,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5.18 ~ 2021.05.17	19	16	0	0	15	17	4	5
2019.05.18 ~ 2020.05.17	24	20	0	0	5	4	19	16
2018.05.19 ~ 2019.05.17	29	29	0	0	5	4	24	20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라.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화,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5.18 ~ 2021.05.17	10	8	0	0	6	7	3	4
2019.05.18 ~ 2020.05.17	12	10	0	0	3	2	10	8
2018.05.19 ~ 2019.05.17	21	21	0	0	9	8	12	10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마. C-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화,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5.18 ~ 2021.05.17	2	2	0	0	0	0	2	3
2019.05.18 ~ 2020.05.17	2	2	0	0	0	0	2	2
2018.05.19 ~ 2019.05.17	2	2	0	0	0	0	2	2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운용실적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준일: 2021년 05월 18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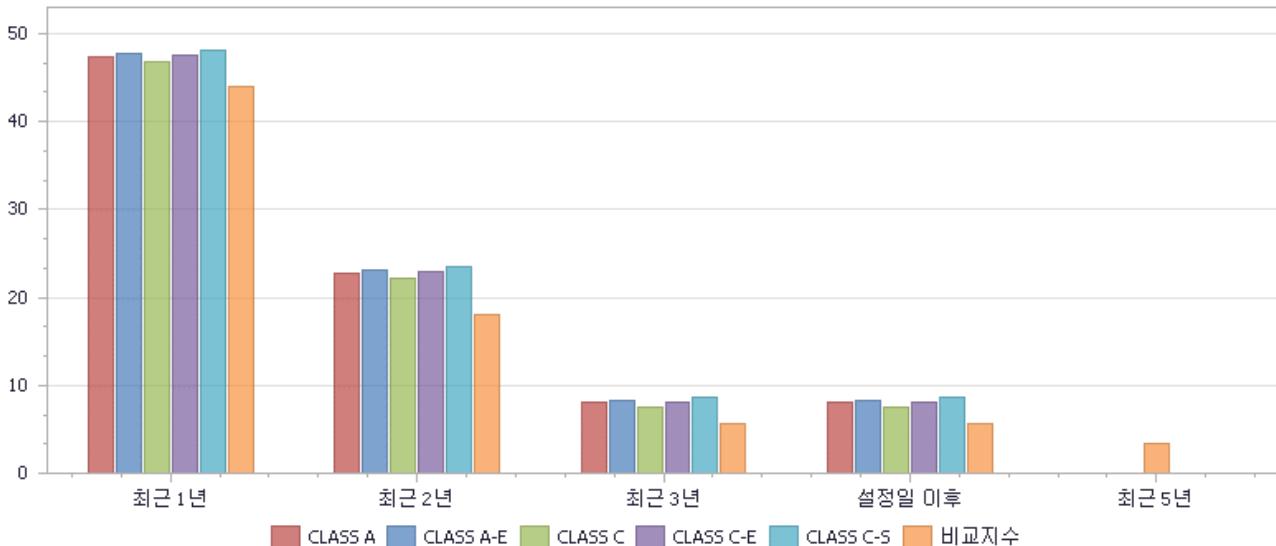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7.35	22.72	8.01	-	8.01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7.78	23.07	8.33	-	8.33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6.79	22.25	7.58	-	7.58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7.49	22.84	8.11	-	8.11
C-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8.16	23.39	8.62	-	8.62
비교지수	43.96	18.00	5.68	-	5.68

※ 비교지수: KOSDAQ 지수*50% + KOSPI 지수*40% + 콜(KRW)*10%

※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 각 클래스별 설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각 클래스별 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일에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클래스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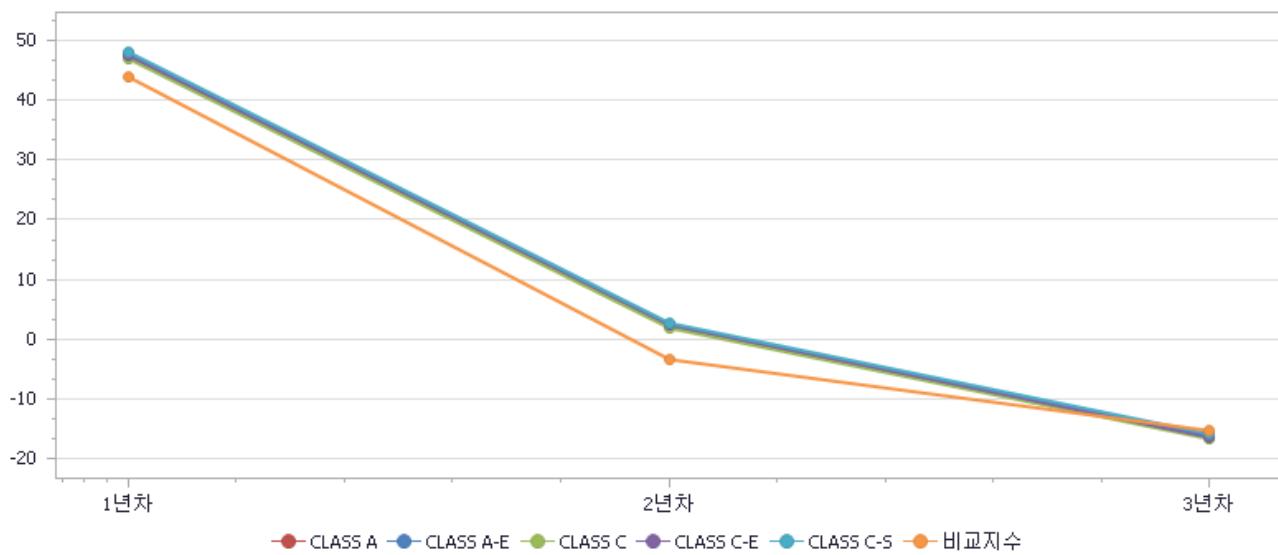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준일: 2021년 05월 18일, 단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7.35	2.26	-16.40	-	-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7.78	2.56	-16.14	-	-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6.79	1.87	-16.75	-	-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7.49	2.36	-16.31	-	-
C-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8.16	2.83	-15.90	-	-
비교지수	43.96	-3.28	-15.22	-	-

※ 비교지수: KOSDAQ 지수*50% + KOSPI 지수*40% + 콜(KRW)*10%

※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기준일에 설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클래스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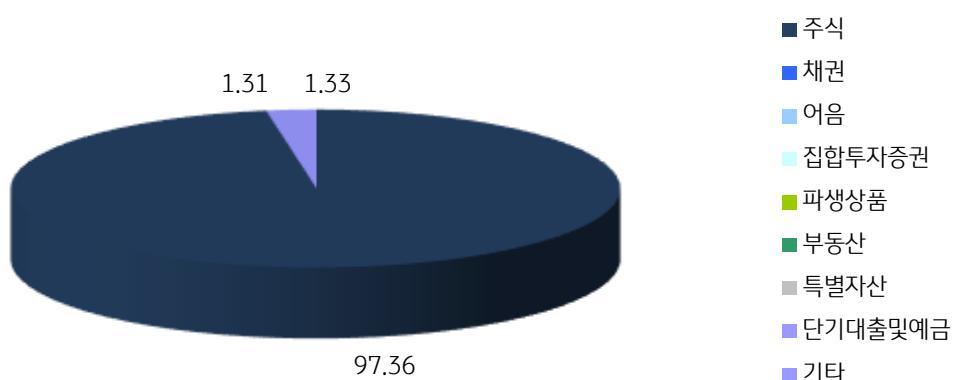
다. 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단위: 억원, %, 기준일: 2021년 05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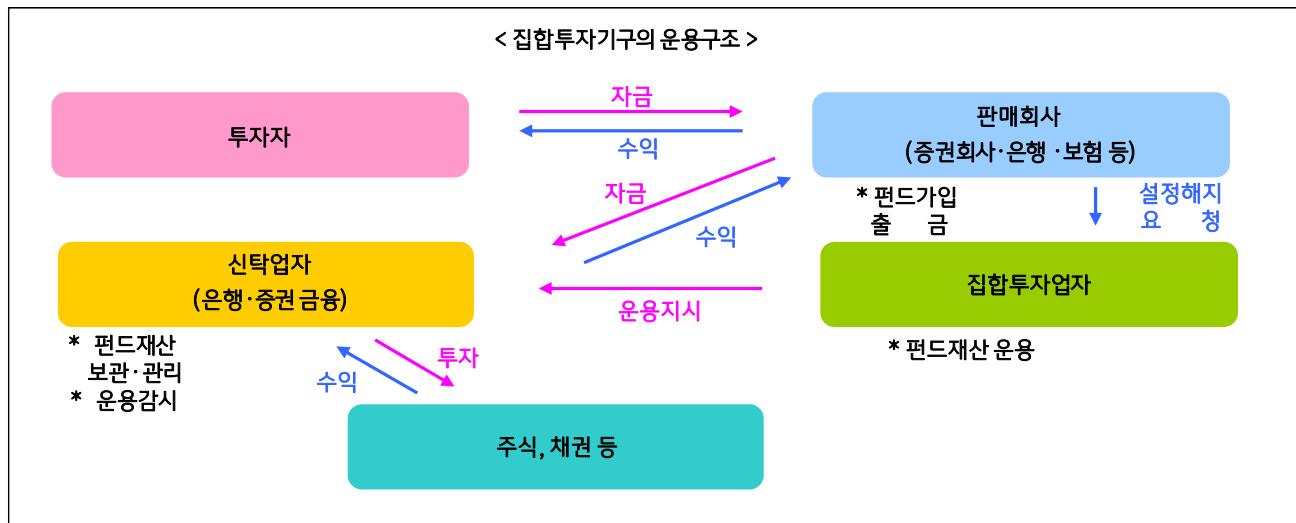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28	0	0	0	0	0	0	0	0	0	0	28
	(97.3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1)	(1.33)	(100.00)
KRW	28	0	0	0	0	0	0	0	0	0	0	28
	(97.3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1)	(1.33)	(100.00)

※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 어음에는 CD를 포함함

※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권과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B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2167-8200
주요 연혁	1988.04.28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주)'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주은투자자문(주)'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주)'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주)'에서 'KB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주)국민은행 → (주)KB금융지주)
자본금	38,337,750,000원
주요주주	(주)KB금융지주 100%
투자신탁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국민은행(계열회사)

나. 주요 업무

-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4)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 목	제33기	제32기
기 간	2020.12.31	2019.12.31
현금 및 예치금	25,208,659,305	20,349,591,5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28,849,406,734	203,431,071,5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2,860,820,000	31,939,280,080
파생상품자산	1,044,163,484	660,054,281
대출채권	2,949,000,000	2,586,510,000
유형자산	6,355,630,714	7,818,234,156
기타금융자산	28,704,817,657	33,033,883,721
이연법인세자산	3,990,483,712	5,351,750,213
기타자산	5,638,463,233	4,847,384,678
자산총계	335,601,444,839	310,017,760,16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238,160,700
예수부채	4,941,546,898	2,501,751,594
파생상품부채	119,023,012	18,372,349
기타금융부채	75,298,649,941	82,631,308,225
충당부채	624,068,802	624,068,802
순확정급여부채	363,701,108	353,699,513
기타부채	31,175,368,763	28,408,806,470
부채총계	112,522,358,524	114,776,167,653
지배기업주주지분	223,079,086,315	195,241,592,511
자본금	38,337,750,000	38,337,750,000
자본잉여금	245,566,038	245,566,0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3,285,397	(261,945,117)

이익잉여금	184,272,484,880	156,920,221,590
비지배자분	-	-
자본총계	223,079,086,315	195,241,592,511
부채와 자본총계	335,601,444,839	310,017,760,164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 목	제33기	제32기
기 간	2020.01.01~2020.12.31	2019.01.01~2019.12.31
영업수익	191,426,762,601	148,780,132,961
영업비용	112,687,066,575	82,043,034,170
영업이익	78,739,696,026	66,737,098,791
영업외수익	260,895,588	199,827,058
영업외비용	1,060,170,173	687,448,61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7,940,421,441	66,249,477,230
법인세비용	20,623,778,042	17,350,359,967
당기순이익	57,316,643,399	48,899,117,263
기타포괄이익	485,230,514	(409,257,735)
총포괄이익	57,801,873,913	48,489,859,528

라. 운용자산 규모

(2021년 05월 18일 현재, 단위: 억좌)

투자신탁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재간접형					
수탁고	67,619	19,989	90,608	28,701	28,135	37,383	115,103	8,582	118,019	514,13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신탁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35
전화번호	☎ 1588-1111
인터넷 홈페이지	www.kebhana.com

나. 주요 업무

-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국민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1 KB증권빌딩 7층
전화번호	☎ 1588-9999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나. 주요 업무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NICE 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전화번호	☎ 02-3215-1450	☎ 02-399-3350	☎ 02-398-3900	☎ 02-721-5300
인터넷 홈페이지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 계약서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1)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5)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1)~4) 내용 중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은 "발행된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봅니다.
- (3) 연기수익자총회
 -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 투자신탁의 합병
-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6)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열람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¹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해당 주체¹: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개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매일경제신문(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경향신문 포함)에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집합투자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 (3)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 후 2월 이내에 법 제 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라)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 계약서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및 투자 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나)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펀드명	성명(상호)			
KB 코스닥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	KB금융지주	계열회사	매매거래	주식 16
	KB금융지주	최대주주	매매거래	주식 16
	KB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5,512
	KB증권	자판	위탁거래	주식 22,046

나.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증 개 회 사 의 선 정 기 준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p>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증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주) 내부통제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p> <p>① 회사는 증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회사는 증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증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회사는 증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증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p> <p>⑤ 준법감시인은 증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KB자산운용(주)
- 투자목적: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2억원
- 투자기간: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다만, 3년 이전에 투자신탁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속기한까지
- 투자금 회수계획 등: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임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4. 간이투자설명서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의 투자를 하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